

<2007년 7월 8일 서울시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 >

1. 행정법상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국민연금수급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 ④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들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⑤ 허가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는 비록 양수인이 양도인의 허락 하에 당해 영업을 영위 중에 법령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그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설] ① 국가배상법 제4조 ②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국민연금법 제54조). 공권은 성질상 타인에게 이전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6조),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고용보험법 제29조), 공무원의 연금청구권(공무원연금법 제32조) 등은 근거법에서 양도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④ 행정절차법 제10조 ⑤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행정제재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양도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5.2.24, 94누9146).

정답 ②

2.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공정력이 인정된다.
- ②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에 관하여는 개별법의 규정 외에 일반적 규정은 없다.
- ③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 ④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 ⑤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사인의 행위의 흠은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설]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공정력, 확정력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①

3. 다음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범죄요건을 추상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② 헌법상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하고 세부사항일지라도 위임해서는 안된다.
- ③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입법권을 하위기관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행정주체가 정하는 개별적, 구체적 규범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⑤ 판례는 법규명령 형식의 부령의 내용이 행정청의 내부관계를 규정한것에 불과한 경우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시한다.

[해설] ①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헌재 1991.7.8, 91헌가4). ② 본질적 사항이 아닌 세부적 사항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법규명령에 위임은 가능하다. ③ 전면적인 재위임은 허용되지 않으나,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강을 정하고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개별적·구체적 재위임은 가능하다. ④ 행정입법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 처분성이 부정된다. ⑤ 대판 1997.12.26. 97누 15418

정답 ⑤

4. 판례가 재량행위로 판단한 경우는?

- ① 구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 ② 구 공중위생법상 위생접객업허가
- ③ 건축법상 건축허가
- ④ 학교법인 이사 승인처분
- ⑤ 구 사법시험령상 사법시험 문제 출제행위

[해설] ①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대판 1993.5.27, 93누2216), ② 공중위생법상의 위생접객업허가(대판 1995.7.28, 94누13497), ③ 건축법상의 일반적인 건축허가(대판 1995.12.12, 95누9051)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④ 이사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에 속한다(대판 1992.9.22, 92누5461). ⑤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에 있어서 다의적(多義的) 용어의 사용으로써 생긴 모든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없이 재량권이 남용, 일탈된 것으로 그의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에 조금 미흡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수험생으로 하여금 문제의 의미 파악과 정답항의 선택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 출제행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대판 2001.4.10, 99다33960).

정답 ⑤

5. 허가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산림훼손허가를 발급한 후 국제행사를 위한 미관보호를 이유로 훼손중 지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 해야한다.
- ② 주류제조면허는 특허의 일종이다.
- ③ 유기장 영업허가로 인한 영업상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 ④ 운전면허는 학문상 허가에 속한다.
- ⑤ 개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의 적법한 처분 없이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해설] ①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사유가 있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로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대판 1990.10.10, 89누6433). ② 주류제조면허는 재정허가의 일종으로서 일반적 금지의 해제로 자유의 회복일 뿐 새로운 권리의 설정은 아니지만 일단 이 주류제조업의 면허를 얻은 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이다(대판 1989.12.22, 89누46). ③ 유기장영업허가는 유기장 경영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가 아니고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영업자유 회복이라 할 것이므로 그 영업상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행정행위의 본질상 금지의 해제나 그 해제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른 당해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대판 1986.11.25, 84누147). ④ 대판 1997.5.16, 97누2313 ⑤ 대판 1985.11.26, 85누382

정답 ②

6.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채납처분절차에서의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 ②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임원임명
- ③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수용재결
- ④ 행려병자 또는 사자의 유류품처분
- ⑤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

[해설] ①②③④는 행정행위의 대리, ⑤는 강학상 허가

정답 ⑤

7.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법령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는 강학상 철회이다.
- ② 판례는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본다.
- ③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 ④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철회시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
- 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시 의견제출절차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해설] ③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와 취소는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 부과와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와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 바도 없으므로, 설사 부과와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와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대판 1995.3.10, 94누7027). 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2조 제3항).

정답 ⑤

8.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하는 사항
- ② 공중위생, 식품위생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③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⑤ 출입국관리, 난민, 귀화에 행하는 사항

【해설】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사항(제3조 제2항)

-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6)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 (7)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8)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 (9)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답 ②

9.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절차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행위로써 준사법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 ② 현행법상 조세법, 관세법, 출입국사법, 교통사법 등에 적용된다.
- ③ 통고처분권자는 검사이다.
- ④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 다시 소추받지 않으며 처벌절차는 종료된다.
- ⑤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통고처분권자는 검사가 아니고, 법률상 규정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관세청장, 세관장, 출입국관리소장,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이다.

정답 ③

10.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근거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 ② 국무총리소속에 설치한다.
- ③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고충처리 민원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실지조사는 행정기관에 접수된 사항에 국한된다.
- ⑤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르지 않을시 문서로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해설] 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근거법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② 행정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제6조 제1항). ③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④ 고충처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제31조 제1항). ⑤ 제39조 제2항

정답 ⑤

11.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권력적 사실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판례에 의하면 국가배상사건에서 수소법원은 선결문제로서의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
- ③ 판례에 의하면 소집종인 향토예비군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 ④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그 비용 부담하는 자는 배상책임이 없다.
- ⑤ 국가배상청구소송제기 전에 반드시 배상심의회의 전심절차를 거쳐야한다.

[해설] ① 권력적 사실행위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에 해당한다. ②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계고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2.4.28, 72다337). ③ 향토예비군도 그 동원기간 중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소정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1970.5.26, 70다471). ④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⑤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

정답 ③

12. 다음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된다.
- ② 판례는 처분청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할 수 없다고 본다.
- ③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가 인정된다.
- ④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된다.
- ⑤ 구술심리가 인정된다.

[해설] ※ 행정청의 처분 의무 불이행시 심판과 소송의 비교

㉠ **행정심판** ⇨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

㉡ **행정소송(간접강제)** ⇨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정답 ③

13. 판례에 의할 때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목변경신청거부행위나 지적공부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목변경한 것에 대한 변경신청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공적장부 기재 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 ② 행정청이 내리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수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③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절차 중의 중간단계에 불과하나 이로써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발생한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내인가를 받은 자의 본인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취소하였을 뿐 본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내인가 취소를 본인가 신청거부처분으로 본다.
- ⑤ 대규모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사업 등에 있어 인허가에 앞서 사전에 요건의 일부를 심의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시설공사 등을 착수할 수 있게 하는 처분은 행정내부적 중간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해설] ①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4.4.22, 2003두9015 전원합의체). ② 대판 1979.12.28, 79누218 ③ 사업인정은 건설부장관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대판 1995.12.5, 95누4889). ④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에 기한 양도·양수 인가신청에 대하여 피고 시장이 내인가를 한 후 내인가에 기한 본인가 신청이 있었으나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가 합의에 의한 정당한 신청서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 내인가의 법적 성질이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아니든 그것이 행정청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내인가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따로 인가 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인가취소를 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1.6.28, 90누4402). ⑤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8.4.28, 97누21086).

정답 ①

14.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다.
- ②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당해 처분 등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 ③ 당사자 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④ 판례는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구소가 취하되고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었을 때, 신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 ⑤ 판례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무효등확인소송과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설] ④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2004.11.25, 2004두7023). 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1984.5.29, 84누175).

정답 ⑤

15.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한다)

- ① 행정소송법은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② 판례는 원칙상 거부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
- ④ 금전납부로 인한 손해는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할 수 없다.
- ⑤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②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교도소장의 점견허가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대판 1991.5.2, 자91두15). ③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대결 1999.11.26, 자 99부3). ④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이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는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대결 2001.10.10, 자 2001무29). 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정답 ④

16.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한다)

- ① 소송요건이 결여된 경우 각하판결을 한다.
- ② 사정판결의 경우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 ④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다른 징계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⑤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

[해설] ②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행정소송법 제29조 ⑤ 행정소송법 제30조

정답 ②